

STOP!
US military crimes

U.S. ARMY

미군범죄피해, 이렇게 해결하십시오

미군범죄피해,
이렇게 해결하십시오

미군범죄피해 상담 안내서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usacrime.or.kr

인권정보
SAC2

u s a c r i m e . o r . k r

미군범죄피해 상담 안내서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목차

1 미군범죄, 누구나 피해자일 수 있다.

미군범죄 피해자를 위한 가이드북을 만들며 04

2 미군범죄 현황

최근 10년간 미군범죄 발생 현황 06

미군범죄 처리 현황 07

3 미군범죄를 당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가해자의 신원을 확인해야 한다. 12

목격자 및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 13

가해 미군이 공무중인지, 공무외 상황인지 확인해야 한다. 14

경찰서에 신고해야 한다. 14

관련 시민단체와 함께 사건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한다. 15

변호사 선임시 주의해야 한다. 16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17

4 형사처벌, 어떻게 진행되나

초동수사와 입건 18

기소 19

재판 20

5 손해배상, 어떻게 처리되나

국가배상 신청과 손해배상 소송의 차이점 22

02 미군범죄피해, 이렇게 해결하십시오

국가배상 처리에 걸리는 시일 24

급한 치료비 등을 미리 지급받는 방법 24

국가배상 처리절차 26

국가배상 신청하는 곳 27

국가배상 신청에 필요한 서류 30

국가배상금 지급받는 방법 31

6 미군에 의한 교통사고시 유의할 점

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경찰에 신고한다. 33

가해 미군이 현장을 이탈하지 못하도록 한다. 34

차량번호와 가해 미군의 신분을 확인한다. 34

7 관계기관 연락처

주한미군 36

한국중앙정부 37

지방자치단체 주한미군 관련 주민상담센터 38

법률단체 39

시민단체 39

8 부록_ 배상서류

손해 또는 상해배상 신청서(견본과 작성사례) 40

공무사건 사전지급 신청서(견본과 작성사례) 44

공무외사건 사전지급 신청서(견본과 작성사례) 46

1 | 미군범죄, 누구나 피/해/자/일 수 있다.

미군범죄 피해자를 위한 가이드북

미군범죄는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에 의해 가해자가 처벌되고 피해자가 배상을 받습니다. 일반 외국인이 범죄를 저지를 경우 국내법에 의해 처벌되지만 미군들은 다릅니다. 게다가 SOFA에 의해 보호받는 대상으로는 미군들뿐만 아니라 미군의 가족, 미군속과 그들의 가족까지 포함됩니다.

미군범죄 처리와 배상 과정에서 SOFA의 내용이 지나치게 미군들에게 유리하고 한국인 피해자들에게는 불리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SOFA에 따르면 범죄자에 대한 구속수사가 거의 불가능하며, 미군기지내 수사권이 제한되어 한국경찰의 신속한 수사가 어렵습니다. 피해자가 배상을 위해 미군인을 상대로 소송하려면 SOFA 처리절차 상 매우 복잡하며, 미군당국의 배상산정을 통해 배상액을 지급받는 경우 그 액수가 적어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최근 피해자가 신속하게 배상받을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고 있지만 홍보가 미흡하고 미군당국이 배상하지 않으면 강제력이 없어 제대로 집행되지 않는 문제점을 갖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미군범죄가 '나와는 먼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군수에 비해 전국적으로 미군들이 주둔하고 있기 때문에 쉽게 겪을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우리나라에는 행정구역상 울산광역시와 전라남도를 제외한 나머지 광역 시도별로 약 100여개의 미군기지와 시설이 존재하며 약 3만 3천여명의 미군들이 주둔하고 있습니다. 2001년 교통사고 발생현황에 의하면 울산, 전남, 제주를 제외한 지

역의 경찰청에 미군에 의한 교통사고가 접수되었습니다. 미군수가 많지 않아 범죄 발생수가 다른 범죄에 비해 낮지만, 전국적으로 미군들이 주둔하기 때문에 피해대상지역은 아주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 벌어진 미군범죄 추이를 보면 기지인근뿐만 아니라 일반 도시 변화가에서 발생하는 빈도수가 늘어가고 있습니다. 서울 신촌이나 홍대 근처, 서초동, 부산 대연동 변화가, 대구 중구 변화가 등지에서 미군에 의한 폭행사건들이 발생하였고 교통사고인 경우 지역을 가리지 않고 일어납니다.

미군범죄 피해자 대부분은 자신이 미군에게 사고를 당할 것이라고 짐작조차 해본적이 없다고 말합니다.

미군범죄 처리절차가 까다롭고 복잡하여 해당경찰도 능숙하게 처리하지 못하며 한국인 피해자들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 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군기지가 있는 지자체에서도 미군범죄 대처 요령을 주민들에게 알려주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이 책자는 지난 11년 동안 본회가 미군범죄를 다루면서 피해자 상담을 진행한 결과를 토대로 만들어 졌으며, 미군에 의해 사고를 당한 경우 어떻게 처벌하고 배상받을 수 있는 지 알 수 있도록 하는 데에 목적이 있습니다.

미군에 의해 사고를 당한 피해자들의 인권이 보호되고 구제되는 데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2004. 9.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상임대표 문대골)

2 | 미군범죄 현황

1. 최근 10년간 미군범죄 발생 현황

미군과 SOFA 대상자들의 범죄 발생 현황은 한국 법무부에서 제출하는 통계수치를 토대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군범죄는 발생 건수를 기준으로 199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연간 1천건을 넘어서다가 꾸준히 감소하여 1990년대 중후반 들어 연간 6백~7백건대로 줄어들었습니다. 유형별로도 198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폭행 등이 가장 많고 강력사건도 적지 않았으나 1990년대 이후 그 같은 범죄가 꾸준히 감소하고, 상대적으로 교통 사건이 급증하여 전체 미군범죄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1990년대 이후 미군범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높아지고 민간 차원의 대응이 활성화된 것과 함께, 미흡하나마 1991년과 2001년 두 차

레 SOFA 개정이 이루어진 성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 10년간 벌어진 미군범죄 현황은 크게 2000년을 기점으로 나누어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는 1999년 10월 이후 미군과 미군속에 의한 피해액 200만원 미만의 물적 피해 교통사고(도로교통법 위반 범죄)에 대해서는 입건하지 않는 제도를 시행하면서 범죄 통계에서 제외시켰기 때문입니다. 그에 따라 1999년 미군인의 도로교통법 위반 범죄가 290건에 달하다가 2000년 들어서는 38건으로 250건 가량 대폭 줄어들었습니다. 이는 전체 미군범죄 발생 현황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어 1999년 미군범죄 발생현황이 총 761건에서 2000년 506건으로 250여건이 감소되었습니다.(표 참고)

수치로만 보자면 2000년 들어 미군범죄 발생 건수가 대폭 감소한 것처럼 보이지만, 90년대 이후 도로교통법 위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등 교통사건이 꾸준히 증가해온 추세로 비추어 볼 때 2000년 이후 전체 미군범죄 발생현황은 법무부 통계에서 총계를 기준으로 최소 2백건을 더할 때 실제 발생 현황에 근접한 수치가 나올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2000년 이후 실제 미군범죄 발생현황은 90년대 중반 이후와 마찬가지로 여전히 6백~7백건대를 이를 것으로 보이며, 이는 평균 하루에 약 2건 꼴로 발생하는 것입니다. 2003년의 경우 도로교통법 위반 범죄가 전년도에 비해 55건에서 70건으로 증가하였고, 특가법(도주차량) 위반 범죄의 경우 5건에서 18건으로 증가하는 등 2000년 들어 미군 교통관련 사건이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어,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2. 미군범죄 처리 현황

범죄 행위를 제대로 처벌하는 것은 사고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습니

다. 그러나 미군범죄인 경우 한국측이 처벌할 수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 권리를 포기하고 있어 범죄 예방의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SOFA에 따르면 한국측이 미군범죄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는 1차적 권한을 갖는 경우는 대부분 공무가 아닌 사건입니다. 공무중에 벌어진 사건은 미군측에서 1차적 권리를 행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국이 처벌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는 재판 권한을 모두 행사하지 않습니다. 미군속이나 가족등 민간인인 경우 100% 한국측이 재판권리를 행사하고 있지만, 미군인의 경우 행사 비율이 아주 낮습니다.

1990년에는 미군인 범죄에 대한 재판권 행사율이 0.8%였고 1991년에야 처음으로 1%대에 진입했습니다. 이후 완만하게 증가하여 1990년대 중반까지 5% 내외, 2000년대 들어서 7%대에 이르고 있습니다. 2003년에는 무려 31.0%의 재판권 행사율을 보이고 있는데 이렇게 재판권 행사율이 늘어나게 된 것은 크게 세 가지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표 참고)

첫째, 앞서 설명했듯 2000년 이후 전체 미군범죄에서 200만원 미만 대물 교통사고가 통계에서 제외되어 재판권 행사율이 상대적으로 늘어났습니다. 과거 200만원 미만 대물 교통사고는 경미하다고 하여 대부분 재판권을 행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둘째, 2002년부터 통계상 미군인 범죄 발생현황을 세부적으로 나누어 미군인 범죄 중 미군측이 전속적 관할권이나 1차적 재판권을 갖는 사건, 그리고 한국측에 공소권이 없는 사건을 제외한 수치로 재판권 행사율을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1차적 재판권은 서로 포기할 수 있는 권리로 한국측은 1차적 재판권

을 최소 70% 이상 포기하고 있습니다. 입장을 바꾸어 미군측에서도 재판권을 포기하는 경우가 있어야 합니다. 지난 2002년 미군장갑차에 깔려 두 여중생이 사망한 사건은 공무중이라 미군측이 1차적 재판권을 갖지만 한국정부는 이를 포기해달라고 요청한 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1차적 재판권을 갖는 사건들은 모두 통계에 포함시켜 미군범죄 발생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는 지표로 활용되어야 합니다.

셋째, 2003년 들어 미군 교통관련 사건에 대한 재판권 행사가 대폭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높아진 교통사고 비율에 비해 거의 대부분 재판권을 포기하다가 2003년부터 재판권 행사가 크게 늘어난 것은 매우 바람직한 현상입니다.

하지만, 2000년 이후의 통계는 도로교통법 위반 범죄 중 200만원 미만 대물 교통사고는 제외한 것임을 감안할 때 미군인 범죄에 대한 재판권 행사비율은 10% 내외로 추정되는 바, 절대적 수치 면에서는 여전히 낮은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재판권 행사율이 낮은 것은 우리나라가 적극적으로 재판권을 행사하지 않는 문제도 있지만, SOFA의 구조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SOFA 본협정에는 양국 모두 상대국이 1차적 재판권 포기를 요청할 경우 이를 '호의적으로 고려'하도록 되어있으나 한국에 대해서는 합의의사록에서 '특히 중요한 경우가 아니면 포기해야 한다'고 별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미군범죄가 발생하면 미군당국은 한국측이 1차적 재판권을 갖는 사건이라도 모두 재판권 포기 요청서를 보내왔고, 그러한 경우 우리나라는 대부분 재판권을 포기해 왔습니다.

표 1 | 미군범죄 발생 및 처리현황 (1990~2003, 법무부)

| 연도별 | 구분 | 발 생 | | | 미군인 범죄 재판권 행사 | SOFA사건 전체 범죄 에 대한 재판권 행사 |
|-----|------|--------------|------------|----------|---------------|--------------------------|
| | | 계 | 미군인 | 미군속등 | | |
| '90 | 건(명) | 1,092(1,214) | 942(1,048) | 150(166) | 8(10) | 154(169) |
| '91 | 건(명) | 1,034(1,160) | 932(1,044) | 102(116) | 14(18) | 116(134) |
| '92 | 건(명) | 754(849) | 642(725) | 112(124) | 10(10) | 122(134) |
| '93 | 건(명) | 802(927) | 624(721) | 178(206) | 13(21) | 192(227) |
| '94 | 건(명) | 896(1,025) | 711(812) | 185(213) | 18(25) | 203(238) |
| '95 | 건(명) | 903(999) | 694(775) | 209(224) | 41(52) | 250(276) |
| '96 | 건(명) | 702(767) | 526(578) | 176(189) | 18(23) | 194(212) |
| '97 | 건(명) | 689(743) | 543(577) | 146(166) | 31(35) | 177(201) |
| '98 | 건(명) | 660(734) | 518(576) | 142(158) | 20(28) | 162(186) |
| '99 | 건(명) | 761(824) | 562(612) | 199(212) | 20(31) | 219(243) |
| '00 | 건(명) | 506(575) | 311(366) | 195(209) | 23(27) | 218(234) |
| '01 | 건(명) | 552(630) | 372(421) | 180(209) | 26(31) | 202(236) |

| 연도별 | 구분 | 발 생 | | | | | | | 미군인 범죄 재판권 행사 | SOFA사건 전체 범죄에 대한 재판권 행사 | |
|-----|------|--------------|--------------|--------------|------------|------------|--------------|--------------|---------------|-------------------------|-------|
| | | 총 계 | 미측관할 제외통계 | 미 군 인 | | | | | | | 미군속 등 |
| | | | | 계 | 미측 관할(A) | 공소권 없음(B) | A,B 제외 | | | | |
| '02 | 건(명) | 469 (510) | 451 (492) | 328 (357) | 18 (18) | - | 310 (339) | 141 (153) | 22 (24) | 163 (177) | |
| '03 | 건(명) | 501 (571) | 378 (446) | 356 (395) | 82 (82) | 41 (43) | 233 (270) | 145 (176) | 72 (92) | 217 (268) | |

표 2 | 죄명별 미군인 범죄 발생현황 (1990~2003, 법무부)

| 연도별 | 죄명별 | 계 | 도로 교통법 위반 |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위반 |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 관세법위반 | 절도 | 기타 | |
|-----|------|------------|-----------|---------------|-------------------|--------|----------|--------|--------|
| | | | | | | | | | '90 |
| '91 | 건(명) | 932(1,044) | 477(478) | 158(159) | 198(280) | 23(26) | 33(52) | 43(49) | |
| '92 | 건(명) | 642(725) | 318(318) | 128(128) | 134(183) | 7(18) | 31(44) | 24(34) | |
| '93 | 건(명) | 624(721) | 317(317) | 111(111) | 129(193) | 10(14) | 31(49) | 26(37) | |
| '94 | 건(명) | 711(812) | 412(412) | 103(103) | 132(194) | 8(11) | 26(43) | 30(49) | |
| '95 | 건(명) | 694(775) | 392(392) | 98(98) | 133(196) | 13(13) | 32(46) | 26(30) | |
| '96 | 건(명) | 526(578) | 313(313) | 100(100) | 80(106) | 4(10) | 19(37) | 10(12) | |
| '97 | 건(명) | 543(577) | 307(307) | 98(98) | 102(127) | 3(3) | 17(23) | 16(19) | |
| '98 | 건(명) | 518(576) | 276(276) | 113(113) | 85(125) | 1(1) | 29(42) | 14(19) | |
| '99 | 건(명) | 562(612) | 290(290) | 134(134) | 89(119) | 1(1) | 16(18) | 32(50) | |
| '00 | 건(명) | 311(366) | 38(38) | 133(133) | 75(116) | 1(1) | 24(33) | 40(45) | |
| '01 | 건(명) | 376(425) | 55(55) | 155(155) | 91(119) | 2(4) | 30(42) | 43(50) | |
| '02 | 건(명) | 328(357) | 55(55) | 151(151) | 72(91) | 관세법 | 특가법 (도주) | 25(29) | 17(22) |
| | | | | | | 3(4) | 5(5) | | |
| '03 | 건(명) | 356(395) | 70(70) | 159(159) | 71(91) | 0(0) | 18(18) | 10(10) | 28(47) |

3 | 미군범죄를 당했을 때 어떻게 하나

대개 '미군범죄' 하면 자신과는 먼 일로 생각하다가 막상 사고를 겪게 되면 대처방법을 알지 못해 속수무책인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미군 교통사고가 전체 미군범죄의 절반을 넘어가고 있는 현실은 교통사고의 특성상 미군범죄 피해자가 기지촌 여성이나 미군기지 주변 주민들에 집중되어 있을 거라는 인식이 매우 편협한 것임을 말해 주고 있습니다.

정작 사고를 당하면 가해자에 대한 처벌은 물론 배상받을 길도 막막해 오죽하면 '미군이나 미군차량이 오면 피하라'는 말이 나올 지경입니다. 하지만 피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비록 현행 SOFA상 한계가 많지만 미군범죄를 당했을 때 어떻게 해야 가해자를 처벌하고 적절한 배상을 받을 수 있는 지 제대로 알고 대처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1. 가해자의 신원을 확인해야 한다

과거 미군범죄 사례를 보면 신원 미상, 성명 불상, 성명 미상의 미

군들이 많이 나옵니다. 범죄미군들이 도망가 버려 신원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도 있고, 영어에 익숙하지 못한 데다가 미국인의 인상착의나 특징을 꼬집어 말할 수 없는 한국인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범죄를 당하면 일단 가해자의 신분증을 통해 이름 및 계급, 소속 부대 등 신원을 확인하고, 교통사고의 경우 차량번호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가능한 한 인상착의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가 범행 후 도주했다면 어느 곳(기지)으로 들어가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2. 목격자(증인) 및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

목격자 확보는 사건 수사와 재판, 배상 지급에서 결정적 역할을 하므로 범죄가 발생하면 사실 관계를 가장 생생히 목격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사람들의 연락처를 알아두고, 가능하면 그들의 증언을 녹음해 두거나 진술서를 받아두어야 합니다. 또한 피해자에게 유리한 물적 증거를 확보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한미 수사당국은 확실한 물증이 없는 경우 가해미군의 말만 믿고 사건을 엉뚱하게 처리하기도 합니다. 또한 배상에서도 물적 증거가 제출되지 않는 피해에 대해서는 전혀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일단 피해를 당하면 그 즉시 사건 현장을 사진으로 찍어두고, 피해자에게 유리한 증거들을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crime.or.kr

사례

1997년 5월 31일 새벽 미군 차니 테리엘은 동두천시 광암동 한모씨 집에 몰래 들어가, 자고 있던 한씨 외손녀의 팬티를 벗기고 더듬다가 칭얼거리는 소리에 깨어난 한씨가 방문을 열자 알몸으로 도망쳤다. 그러나 곧바로 뛰어

나간 가족에 의해 붙잡혀 파출소에 넘겨졌다. 동네 사람들이 '미군이 발뺎 할지도 모른다면 사진을 찍어두라'는 말에 가족들은 미군이 벗어놓고 간 모자, 옷, 신발 등을 찍어두었다. 하지만 경찰의 말만 믿고 필름을 미군측에 넘겨주었다가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그러던 중 방안을 치우려고 이불과 요를 털다가 미군이 벗어놓은 팬티가 떨어졌다. 미군측에서는 팬티를 내놓으라고 여러 차례 전화를 걸어왔다. 이를 거절하자 미군측은 합의금 3천 달러를 제시하며 합의를 종용했다. 가족들이 결정적인 물증을 확보하지 않았다면 미군의 발뺎으로 끝날 수도 있던 사건이었다.

3. 가해 미군이 공무중인지 공무외 상황인지 확인해야 한다

범행 당시 미군이 공무중이었을 경우 SOFA에 따라 한국정부가 재판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미군들은 무조건 공무중이었음을 주장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공무 여부는 미군 당국이 발행하는 공무증명서에 달려 있어 피해자에겐 절대 불리합니다. 그러므로 피해자는 당시 사고가 공무외에 벌어진 일이라고 판단될 때 그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들을 미리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4. 경찰서에 신고해야 한다.

피해를 당하면 앞의 조치와 함께 즉시 경찰서에 신고하여 경찰이 곧바로 미군의 신병을 확보하고 증거, 목격자, 사고 현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범죄가 발생한 경우 초동수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못해 목격자나 증거품을 확보하지 못하면 사건이 미궁으로 빠질 수 있습니다. 사고를 당하면 피해자는 경황이 없어 앞의 조치들을 모두 이행하기 어려워 경찰의 적극적인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경찰이 사건 현장을 보존할 수 있도록 하고, 주위 목격자나 피해자, 가해자의 진술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미군범죄는 외사계에서 처리하나 사건 종류에 따라 교통사고인 경우 교통사고조사계(혹은 처리반), 일반 형사계 등에서 처리하기도 합니다. 경찰 조사가 진행된 경우 자신의 사건을 조사하는 부서가 어디이고 어느 경찰로부터 조사를 받았는지 정확하게 기억해 두어야 합니다.

경찰의 '미군범죄 처리요령' 지침에 따르면 경찰서에서 범죄를 저지른 미군이나 그 가족의 신분을 확인한 뒤 미8군 헌병대에 연락하게 됩니다. 미정부대표의 입회하에 초동수사를 진행할 수 있고, 미군 헌병으로부터 구금인도 요청서와 인수증을 받은 후 가해 미군의 신병을 미군 당국에 넘겨주게 됩니다. 그러나 한국 경찰이 계속 가해 미군을 구속 수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신병을 미군당국에 넘겨주지 않고 조사를 계속 할 수 있습니다.

5. 관련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사건해결에 적극 나서야 한다.

미군범죄 발생시 한국 검찰 및 경찰은 내국인 범죄와 달리 언어 소통의 문제, 처리 절차의 복잡성 등으로 인해 사건 처리 자체를 꺼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개의 피해자들은 사건을 여론화시킬 경우 피해 배상을 받는데 불이익을 당하진 않을까 우려하여 소극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간 미군범죄 처리결과를 보면 사회적으로 여론화된 사건에 대해 미군측에서도 보다 관심을 가지고, 배상에도 적극적인 것으로 확인됩니다. 따라서, 사회적으로 중대한 사건의 경우 시민사회단체와 협조하여 사건을 여론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가해자를 처벌하는 데 있어 사회 여론도 중요하지만 피해 당사자의

의지와 노력이 가장 큰 역할을 합니다. 형사처벌에서 가장 중요한 건 피해자의 처벌의지입니다. 수사 과정에서 가해자 처벌을 요구하고 재판부에 진정서 등을 보내 처벌을 호소하면 결과에 참작이 됩니다.

같은 이유로 가해자와의 합의에도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형사합의는 피해자가 형사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뜻이어서 처벌을 받지 않거나 처벌 정도가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특히 가해미군이 사건 발생 직후에는 모든 잘못을 시인하고, 배상도 모두 해주겠다고 하면서 형사합의를 요구하다가 막상 합의를 해주고 나면 이후 수사과정이나 재판에서 범행사실을 일부 부인하기도 하고 배상에도 소극적인 경우가 있으므로 합의에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이 중하여 가해미군이 재판에 회부될 것이 분명하고, 당장 경제적 어려움이 크지 않다면, 형사합의는 1심 재판이 시작된 이후에 고려해 보아도 늦지 않습니다.

6. 변호사 선임시 주의해야 한다

변호사 선임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형사사건이 아닌 단순한 민사사건의 경우, 특히 소액 사건일 땐 굳이 변호사를 선임할 필요가 없습니다. 혹 국가배상에도 반드시 변호사가 필요하다며 턱 없이 높은 액수를 부르는 등 사건 브로커에 의해 사기를 당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미군관련 사건을 진행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을 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미군 관련 사건은 일반적인 민, 형법이 아닌 SOFA에 의해 처리되기 때문에 SOFA에 대한 사전지식이 있는 변호사가 맡는 것이 사건에 도움이 됩니다.

혼자서 국가배상 신청서류 등을 작성하기 어렵거나 변호사를 선임하고 싶어도 경제 사정상 어려운 경우에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 상담을 받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7.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한다

미군이나 미군속 등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경우 공무원인 경우 국가배상 절차를 통해, 공무원외인 경우 국가배상심의회를 거쳐 주한미군배상사무소를 통해 피해액을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피해자(또는 유가족)가 직접 주소지 또는 사건 발생지 관할 검찰청에 설치된 국가배상심의회에 신청해야 합니다. 만일 국가배상 심의 결과에 만족하지 못한다면 공무중 사건의 경우 한국정부를 상대로, 공무외 사건의 경우에는 미군 개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보통 국가배상 절차가 까다롭고 시일이 오래 걸린다는 이유로 배상 신청을 아예 포기하는 경우도 있는데, 소액이라도 관련 단체들의 도움을 받아 반드시 배상 신청을 해야 합니다. 손해배상은 형사상 처벌과 달리 피해자가 신청을 해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배상 신청을 하면 한미 당국에 미군 피해 현황을 정확히 알릴 수 있고, 같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게 되므로 미군범죄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4 | 형사처벌, 어떻게 처리되나

한국 경찰에 사건이 접수되고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건의 경우 수사과 기소, 재판은 모두 한국 수사, 사법당국에 의해 진행됩니다.

형사처벌이 완결된 후에 피해자가 처벌 결과에 대해 부당하다고 판단되더라도 사법당국의 결정을 번복할 수 없기 때문에 피해자는 형사처벌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여 제대로 처벌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한국측이 재판권을 행사하지 못하거나 행사하지 않기로 결정한 사건은 한국측에서 처벌할 수 없습니다.

미군속이나 가족의 경우 군인이 아닌 민간인이라 미군법에서 재판할 수 없기 때문에 한국측에서 100% 처벌할 수 있습니다.

1. 초동수사와 입건

미군에 의한 사건이 한국 경찰에 접수되어 사고 현장에서 가해 미군의 신병을 확보한 경우 경찰은 가해자의 신원을 확인한 뒤 미군 헌병대에 체포사실을 알리게 됩니다.

SOFA에 의하면 미군을 조사하는 경우 미정부대표가 참여해야 하고 2003년 개선된 내용에 따라 미정부대표는 1시간 이내로 출석하여야 합니다.

미정부대표의 참여하에 간단한 신분확인과 사실조사를 진행할 수

있으나 보통 미군들은 신분확인에만 응하고 조사에는 협조하지 않아 경찰 초동수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를 이유로 경찰들이 초동수사에 소극적이기도 합니다. 현행법이 확실한 경우 미군은 경찰 수사에 협조해야 하고 경찰 또한 적극적으로 초동수사를 진행하여야 하며, 피해자도 경찰에 초동수사를 요구하여야 합니다.

초동수사 후 한국 경찰은 미군 헌병으로부터 구금인도 요청서와 인수증을 받고 가해 미군의 신병을 미군 당국에 넘겨주게 됩니다.

현행법 중 '살인과 같은 흉악범죄 또는 죄질이 나쁜 강간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인멸·도주 또는 피해자나 잠재적 증인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가해 가능성을 이유로 구속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미군당국이 신병인도 요청을 하지 않고 한국경찰이 계속 구속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를 미헌병대에 인계한 후 경찰서 외사계는 담당검사에게 보고한 뒤 사건 수사를 위해 미8군에 피의자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피의자 출석 조사와 함께 피해자나 사건 목격자들의 조사도 함께 진행됩니다. 검찰 조사인 경우 피해자에게 처벌에 대한 의견을 묻기 때문에 이에 대한 피해자의 입장을 정확히 전달해야 합니다.

조사 과정에서 가해미군이 변호사를 통해 합의해 줄 것을 요청하기도 합니다. 성폭력범죄나 단순폭력범죄는 합의시 처벌되지 않으며 다른 범죄는 처벌정도에 반영되기 때문에 합의시에는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합니다.

2. 기소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사건에 대한 재판권 행사를 결정한 경우 법무부를 통해 미군측에 재판권 행사 의견을 제출해야 합니다.

미군에 의한 사건이 발생하고 한국측에 1차적 재판권이 있는 사건인 경우 미군당국은 재판권 포기 요청서를 보냅니다. 포기 요청을 받은 후 28일내에 이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재판권을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28일 이내에 재판권 행사여부를 결정, 미군당국에 통지해야 하며 기소할 경우 약식기소(벌금), 정식기소(재판 회부)를 결정합니다.

구속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검찰은 법무부를 통해 구속의견을 미군측에 전달하고 가해미군의 신병을 인도받아 한국측에 구속할 수 있습니다. 이에 해당하는 유형으로 살인, 강간, 석방대가금 취득목적의 약취·유인, 불법 마약거래, 유통목적의 불법 마약제조, 방화, 흥기 강도, 위의 범죄의 미수, 폭행치사 및 상해치사,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로 사망 초래, 교통사고로 사망 초래 후 도주, 위의 범죄의 하나 이상을 포함하는 보다 중한 범죄 등입니다.

피해자는 담당 검사에게 진정서, 탄원서 등을 제출하여 의견을 피력할 수 있습니다.

3. 재판

정식 기소된 경우 재판이 시작됩니다.

피고인의 권리를 고려하여 구속재판인 경우 신속하게 진행되는 반면 불구속 재판인 경우 상대적으로 시간이 오래 걸리기도 합니다. 대부분 미군사건은 불구속 재판인 경우가 많고, 재판 결과를 보고 배상결정을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배상시일이 오래 걸려 피해자에게 불리합니다. 따라서 재판이 늦어지는 경우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재판부에 요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내법에 따르면 1심 재판 결과에 대해 만족하지 않을 경우 피고인

이나 검사 모두 항소부나 고등법원에 항소할 수 있으며 2심 재판 결과에 대해서도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SOFA에는 이 권리가 피고 미군에게만 적용되며 한국검찰은 제한적으로만 보장됩니다. 피고 미군은 재판결과가 불만족스러울 때 대법원까지 상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고 미군이 항소하지 않거나 무죄로 판결이 날 경우 SOFA에 의해 한국 검찰은 단독으로 항소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재판결과가 나기 전에 피해자는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피해자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 경우 재판부에 신청하면 법원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피해자를 증인으로 채택하여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줍니다. 법정에 출두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재판부에 진정서나 탄원서를 제출하여 의견을 말할 수 있습니다.



5 | 손해배상, 어떻게 처리되나

미군에 의해 사고를 당했을 때 피해 배상을 받는 방법은 사건의 성격에 따라 나누어집니다.

공무중 사건인 경우 국가배상을 신청하거나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공무가 아닌 사건인 경우 국가배상심의회를 거쳐 주한미군 배상 사무소로부터 배상을 받거나 가해자 미군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 미군과 합의하여 피해배상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국가배상은 검찰청 내에 있는 국가배상심의회(보통 송무과에서 담당)에 배상신청서류를 접수하여 심사를 받고 그 결과에 따라 배상금을 지급받는 것을 말합니다.

1. 국가배상을 신청하는 것과 손해배상소송 중 어느 것이 나은가요?

국가배상과 손해배상 소송은 각기 장단점이 있습니다.

공무중 사건의 경우 국가배상에서 필요 서류만 구비하면 국가배상 심의를 거쳐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소송에 비해 상대적으로 절차가 간편하고 시간이 적게 걸립니다. 또한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아도 되므로 비용 부담이 없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 국가배상은 배상금 산정 기준이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소송을 진행한 경우보다 배상금액이 적게 나오는 단점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위자료 부분에서 큰 차이가 나는데, 교통 사망사고의 경

우 법원 판결에서는 피해자가 과실이 없을때 5천만원을 기준으로 하는 반면, 국가배상에서는 사망의 경우 위자료 기준을 피해자 본인에 대해 2천만원, 특정 사건에 대해 30%를 가감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르더라도 최고 2천6백만원에 불과해 절반가량 차이가 납니다. 이에 따라 국가배상심의회 결정에 불복하여 소송으로 가는 비율이 50%를 상회하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피해액이 그다지 크지 않은 경우에는 국가배상을 하는 것이 낫고, 피해액이 상당하고 향후 장애가 예상되어 정확한 법원 판결을 받는 것이 필요한 때에는 시일이 오래 걸리더라도 소송으로 가는 것이 유리합니다.

손해배상 소송과 국가배상 신청을 함께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국가배상심의회 결정에 만족하면 소송을 취하하면 되고, 불만족스러울 경우 소송을 계속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공무가 아닌 사건의 경우 미군당국이 피해를 배상해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단지 위로금 개념으로 국가배상심의회 심사를 거쳐 미군당국이 배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한국 국가배상심의회에 배상 신청을 하면 심사를 한 후 그 결과를 주한미군배상사무소에 전달하면, 주한미군배상사무소에서 재심사하여 결정된 금액을 피해자에게 통지합니다. 재심사 과정에서 배상액이 삭감되는 경우가 많아 배상액수가 손해배상 소송의 경우보다 적게 나오게 됩니다.

손해배상 소송의 경우 가해 미군을 상대로 해야 하는데, 승소하더라도 현실적으로 가해 미군에게서 배상금을 받기 어려워, 미흡하지만 국가배상심의회를 거쳐 미군당국으로부터 지급받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피해액이 크고 향후 장애가 예상되며, 경제적 여유가 있는 경우에

는 손해배상 소송과 국가배상심의회 배상신청을 동시에 진행하기도 합니다. 소송을 통해 피해액을 정확하게 산출하여 미군당국에 적절한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하는 것도 충분한 손해배상을 받기 위한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2. 국가배상은 시일이 얼마나 걸리나요?

국가배상의 경우 배상금 신청에서 지급까지 최소 3개월에서 평균 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그러나 신청 금액에 대한 지구배상심의회의 심의 결과 5천만원 이상인 경우 본부심의회에서 재심의하기 때문에 시일이 더 소요됩니다.

공무가 아닌 사건의 경우 한국측 국가배상심의회 심의 후 주한미군 배상사무소에서 재심사를 하는 데 배상금 지급 결정액이 5만달러 (약 6천만원) 이상이면 본국 소재 미육군배상사무소에서, 10만달러 (약 1억2천만원) 이상이면 본국 소재 육군성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그를 위해 모든 관계서류를 미국 본토에 보내 최종적으로 지급 여부를 결정하게 되므로 배상금 지급까지 시일이 더 많이 걸립니다. 소송의 경우 최소 1년 이상 소요되며 보통 3심 절차까지 모두 진행되기 때문에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3. 급한 치료비라도 먼저 받을 수 없나요?

미군에 의해 사고를 당했을 때 피해자가 돈이 없어서 당장 치료비나 장례비가 필요한 경우 피해액의 일부를 먼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공무중 사건의 경우 치료비와 수리비는 전체 배상액의 50% 이내의 금액을, 장례비는 전액을 한국당국으로부터 미리 지급받을 수 있습

니다. 사전지급 기한은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은데, 다만 신청을 받은 배상심의회는 지체없이 그 지급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무가 아닌 사건의 경우 2003년 한미 SOFA 합동위원회에서 합의한 '공무외 사건에 대한 사전지급 처리절차'에 따라 긴박한 경우 치료비, 장례비등을 사전지급 신청할 수 있고, 4일내에 미군당국이 직접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지급 여부에 대해 미군당국이 일방적으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어 사전지급 신청을 하더라도 거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미리 지급된 사전지급금액은 최종 배상결정액에서 삭감되며, 만일 미리 지급된 금액이 최종 배상결정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차액을 회수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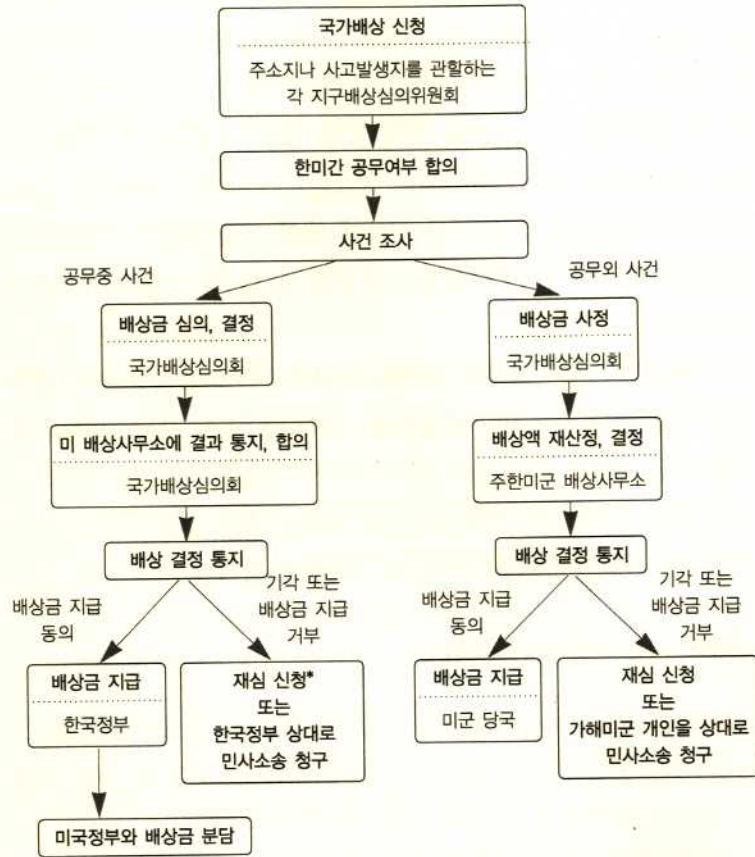
사전지급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공무/공무외 사건에 따라 별도로 마련되어진 신청서 약식을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acrime.or.kr

공무외 사건 사전지급 처리절차

- 관할 지구배상심의회에 사전지급 신청서와 함께 관련 서류를 제출합니다. 국가배상심의회에 전체 손해에 대한 배상을 신청하는 경우 국가배상 신청에 필요한 서류와 함께 사전지급 신청서만 추가하면 됩니다.
- 지구배상심의회는 신청서를 접수받은 후 48시간 이내에 법무부를 거치지 않고 직접 주한미군배상사무소에 관련서류를 송부하여야 합니다.
- 미군측은 관련서류를 송부받은 후 48시간 이내에 사전지급여부를 결정하여 피해자 또는 유족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 미측이 결정한 사전지급금액에 동의하는 피해자 또는 유족은 미군으로부터 직접 사전지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처리절차가 궁금해요



* 공무중 사건에서 지구배상심의회 산정 결정에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으나 본부배상심의회 산정 결정에는 재심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유의사항

- 이미 제출한 배상 신청내용을 수정해야 할 경우 배상신청 변경서를 제출하여 수정할 수 있습니다.
- 통상적으로 미군당국은 관련 피해자들에게 사망자의 경우 80~100만원, 부상자의 경우 30~60만원 정도의 위로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때 지급한 위로금은 원칙적으로 손해배상과는 별도로지만 배상금 산정과정에서 위자료로 인정되어 배상금에서 공제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사건 초기 위로금을 받으실 때에는 손해배상과 관계없다는 것을 문서로 받아 두어야 차후 배상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
- 배상 신청이 기각 또는 각하된 경우 결정서를 받은 후 2주일 내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배상금은 신청인으로부터 배상금 지급 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1주일 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 국가배상은 피해자가 그 손해의 발생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국가배상 신청은 어디에 하죠?

주소지나 사고발생지를 관할하는 각 지방 검찰청 내 지구배상심의위원회에 직접 방문하여 서류를 제출하거나 시간상 어려운 경우 등 기우편으로 발송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각 지구 배상심의회 명칭 및 연락처

| 명칭 | 전화번호 | 주소 |
|------|---------------|-------------------------------|
| 서울지구 | 02-530-3628,9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724 서울고등검찰청 |
| 인천지구 | 032-420-4672 | 인천광역시 남구 주안6동 983 인천지방검찰청 |
| 수원지구 | 031-210-4571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원천동 80 수원지방검찰청 |
| 춘천지구 | 033-251-5432 | 강원도 춘천시 효자2동 356 춘천지방검찰청 |
| 청주지구 | 043-270-8674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수곡동 93-1 청주지방검찰청 |
| 대전지구 | 042-470-3258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1390 대전고등검찰청 |
| 대구지구 | 053-740-4673 |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2동 458-2 대구고등검찰청 |
| 부산지구 | 051-250-3274 |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동 1501번지 부산고등검찰청 |
| 울산지구 | 052-228-4672 | 울산광역시 남구 옥동 635-3 울산지방검찰청 |
| 창원지구 | 055-239-4436 | 경상남도 창원시 사파동 1 창원지방검찰청 |
| 광주지구 | 062-231-3264 | 광주광역시 동구 자산동 342-1 광주고등검찰청 |
| 전주지구 | 063-259-4673 |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1가 1416-1 전주지방검찰청 |
| 제주지구 | 064-729-4579 | 제주도 제주시 이도 2동 950의 1 제주지방검찰청 |

법원·검찰청 관할구역표

| 고등법원 | 지방법원 | 지원 | 관할구역 |
|------|------|--------------------|---|
| 서울 | 서울 | 중앙 | 종로구, 중구, 성북구, 강남구, 서초구, 관악구, 동작구 |
| | | 동부 | 서울시 성동구, 광진구, 강동구, 송파구 |
| | | 남부 | 서울시 영등포구, 강서구, 양천구, 구로구, 금천구 |
| | | 북부 | 서울시 동대문구, 중랑구, 도봉구, 강북구, 노원구 |
| | | 서부 | 서울시 서대문구, 마포구, 은평구, 용산구 |
| | | 의정부 | 의정부시, 동두천시, 구리시, 남양주시, 고양시, 양주군, 연천군, 포천군, 가평군, 강원도 철원군 |
| | | 고양 | 부고양시, 파주시, 인천시 |
| | 인천 | 부천 | 부천시, 김포시 |
| | | | 수원시, 안양시, 과천시, 오산시, 의왕시, 군포시, 화성군, 용인시 |
| | 수원 | 성남 | 성남시, 하남시, 광주군 |
| | | 여주 | 여주군, 이천시, 양평군 |
| | | 평택 | 평택시, 안성시 |
| | 춘천 | 안산 | 안산시, 광명시, 시흥시 |
| | | | 춘천시,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홍천군, |
| 강릉 | | 강릉시, 동해시, 삼척시 | 원주 원주시, 횡성군 |
| | | 속초시, 양양군, 고성군 | |
| | 영월 | 태백시, 영월군, 정선군, 평창군 | |

| 고등법원 | 지방법원 | 지원 | 관할구역 | | |
|------|------------|-----------------------------------|-----------------------------------|-----------------------------------|---|
| 대전 | 대전 | | 대전시, 연기군, 금산군 | | |
| | | | 홍성 보령시, 홍성군, 예산군, 서천군 | | |
| | | | 공주 공주시, 청양군 | | |
| | | | 논산 논산시, 부여군 | | |
| | | | 서산 서산시, 태안군, 당진군 | | |
| | | 천안 천안시, 아산시 | | | |
| | 청주 | | 청주시, 청원군, 진천군, 보은군, 괴산군 | | |
| | | | 충주 충주시, 음성군 | | |
| | | | 제천 제천시, 단양군 | | |
| | | | 영동 영동군, 옥천군 | | |
| | | 대구시, 영천시, 경산시, 칠곡군, 성주군, 고령군, 청도군 | | | |
| 대구 | 대구 | 안동 | 안동시, 영주시, 봉화군 | | |
| | | 경주 | 경주시 | | |
| | | 포항 | 포항시, 울릉군 | | |
| | | 김천 | 김천시, 구미시 | | |
| | | 상주 | 상주시, 문경시, 예천군 | | |
| | | 의성 | 의성군, 군위군, 청송군 | | |
| | | 영덕 | 영덕군, 영양군, 울진군 | | |
| | | 가정 | 대구시, 영천시, 경산시, 칠곡군, 성주군, 고령군, 청도군 | | |
| | | 부산 | 부산 | | 부산시 중구, 서구, 동구, 영도군, 부산진구, 북구, 사상구, 강서구, 사하구, 동래구, 연제구, 금정구 |
| | | | | | 동부 부산시 해운대구, 남구, 수영구, 기장군 |
| 가정 | 부산시, 울산광역시 | | | | |
| 울산 | 울산시, 양산시 | | | | |
| 창원 | 창원 | | 창원시, 마산시, 진해시, 함안군, 김해시, 의령군 | | |
| | | | 진주 진주시, 사천시, 남해시, 하동군, 산청군 | | |
| | | | 통영 통영시, 거제시, 고성군 | | |
| | | | 밀양 밀양시, 창녕군 | | |
| 광주 | 광주 | | 거창 거창군, 함양군, 합천군 | | |
| | | | 광주시, 나주시, 화순군, 장성군, 담양군, 곡성군, 영광군 | | |
| | | | 목포 목포시, 무안군, 신안군, 함평군, 영암군 | | |
| | | | 장흥 장흥군, 강진군 | | |
| | 전주 | 전주 | 순천 | 순천시, 여수시, 광양시, 구례군, 고흥군, 보성군 | |
| | | | 해남 | 해남군, 완도군, 진도군 | |
| | | | 가정 | 광주시, 나주시, 화순군, 장성군, 담양군, 곡성군, 영광군 | |
| | | | | 전주시, 김제시, 완주군, 임실군, 진안군, 무주군 | |
| | | | | 군산 군산시, 익산시 | |
| | | | | 정읍 정읍시, 부안군, 고창군 | |
| 제주 | 제주 | 남원 | 남원시, 장수군, 순창군 | | |
| | | | 제주시, 서귀포시, 남제주군, 북제주군 | | |

6. 국가배상 신청시 필요한 서류는 뭔가요?

필수

배상신청서 1통 (신청인이 2인 이상인 경우 신청인 표시표 첨부)

신청인 및 법정대리인의 주민등록표 등본 1통

대리인이 배상신청시 신청인의 인감증명이 첨부된 위임장

· 신청서는 각 지방검찰청의 국가배상심의회(송무과)나 시청, 도청 등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 우측 상단에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명기하고, 신청서에 기재할 지면이 부족할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신청인이 피해자가 아닐 때에는 신청할 권리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예-호적등본)를 첨부해야 합니다.

추가

사전지급을 요청할 경우 사전지급 신청서 1통 (공무/공무외 사건 별도 양식)

사망의 경우 호적등본,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월수입액 증명서, 치료비 영수증 또는 명세서(치료중 사망한 경우) 각 1통

상해, 장애의 경우 상해(장애)진단서 또는 소견서, 치료비 영수증 또는 명세서, 향후 치료비 추정서, 월수입액 증명서(수입 손실이 있는 경우, 미제출시 보통인부 건설노임단가로 산출) 각 1통

차량 피해의 경우 차량 등록원부 등본, 자동차등록증 사본, 수리견적서(수리불가능시 불가능증명, 말소시 말소 및 폐차증명원), 수리비 영수증 또는 내역명세서 각 1통

건물 피해의 경우 건물 등기부 등본 또는 건축물 대장 등본, 수리비 영수증 또는 내역 명세서, 월수입액 증명서(수입 손실이 있는 경우)

각 1통

토지(농작물) 피해의 경우 등기부 등본 또는 토지(임야) 대장 등본, 복구비 영수증 또는 내역 명세서 또는 견적서, 거주지 읍·면·동 사무소장 작성의 피해사실확인원 및 피해금액을 산출한 근거자료 각 1통 (농지경작자의 경우 농지경작자 증명원 1부, 임대차 계약에 의한 농지경작일 경우는 임대차 계약서 1부 추가)

기타 피해의 경우 손해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교통사고의 경우 교통사고사실 확인원, 훈련피해의 경우 훈련피해보고서(미측 발행, 임의), 기타 사고의 경우 사고발생 확인서 등), 사진 등

7. 국가배상금을 지급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신청인이 배상심의회의 배상결정에 동의하여 배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 배상결정통지서에 기재된 배상금지급 행정청에 다음의 서류를 구비하여 배상금 청구를 하면 됩니다.

1. 신청인이 직접 청구하는 경우

가. 동의 및 청구서 2통

나. 배상결정서 정본 1통

2. 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

가. 위 1.항에 규정된 서류

나. 신청인의 인감증명서 2통

다. 신청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 법정대리인의 인감증명서 2통

라. 대리권을 증명하는 위임장 및 대리인의 인감증명서 각 2통

3. 기타

가. 예금계좌에 입금을 원하는 경우에는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등 필요한 사항을 동의 및 청구서 또는 별지에 기재하여 제출해야 한다.

나. 동일한 내용으로 손해배상의 소송을 제기하여 배상금지급의 확정판결을 받거나 이에 준하는 화해 인낙 조정 등이 있는 경우에는 확정판결 정본이나 화해 인낙 조정조서 정본 등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32 미군범죄피해, 이렇게 해결하십시오

6 | 미군에 의한 교통사고시 유의할 점

미군차량이 보이면 무조건 피하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미군에 의한 교통사고는 제대로 해결되지 못하는 게 현실입니다. 전체 미군범죄의 70%를 교통관련 사고가 차지하고 있는 것에 비해 교통사고 처리 과정은 피해자에게 불리한 상황입니다. 전반적인 처리과정은 앞서 서술한 미군범죄를 당했을 때 대응하는 방법과 동일하나 교통사고의 경우 특별하게 주의할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고가 발생하면 즉각 경찰에 신고한다.

대개 한국인끼리 사고가 발생하면 경찰에 신고하기보다 쌍방 합의로 문제를 해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미군과 사고가 났을 경우 현장에서 합의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며, 군용차량인 경우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보험처리조차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사고를 경찰에 접수하고 일반 미군범죄 처리 절차를 거쳐 해결할 때만이 적절한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한 후 현장에 출동할 때까지 기다려 사건이 처리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2. 가해 미군이 현장을 이탈하지 못하도록 한다.

미군에 의한 교통사고 중 중한 피해를 입혔음에도 불구하고 미군이 도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2002년 11월 오산에서 벌어진 교통사고에서 한명이 숨지고 4명이 중경상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가해 미군은 자신의 차량을 버리고 도주하였습니다. 다행히 미군이 버리고 간 차량안에 신분증이 있어서 도망친 미군을 찾기는 하였으나 신분증이 없었다면 미해결 사건으로 남았을 것입니다.

경미한 사건인 경우 사고처리도 하지 않은 채 도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행히 피해자가 도망친 차량의 번호를 기억하여 경찰에 신고한 후 경찰 조사과정에서 도망친 이유를 물으면 가해 미군은 한국인이 가라고 손짓했기 때문에 간 것이지 도망친 것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언어가 통하지 않는 것을 이용하여 사고 책임을 회피하려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경찰이 도착하기 전까지 사고 미군이 현장을 이탈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3. 차량 번호와 가해 미군의 신분 등을 확인한다.

일반 교통사고에서도 차량 번호와 차량종류, 색깔 등을 확인하는 것은 필수입니다. 미군과의 교통사고에서도 미군차량 번호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미군용차량인 경우 일반 차량과는 다른 번호판을 부착하고 있어 쉽게 기억하기 어렵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사고 운전자가 SOFA 대상자인지 신분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SOFA 대상자에는 미군, 미군의 가족, 미군속, 미군속의 가족 등이 있으며 미군부대에서 일하는 SOFA 대상자가 아닌 민간인인 경우 국내법에 근거하여 처리되기 때문에 이를 구분해야 합니다.

SOFA 대상자인 경우 이름과 소속부대, 연락처 등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경찰이 출동할 때까지 가능한 신원과 연락처 등을 알아두고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보험회사 연락처까지 알아두는 것이 현명합니다. 미군인이 가입되어 있는 보험회사인 경우 일반 국내회사와는 달리 사후 처리를 하지 않는 회사가 있습니다. 피해자가 먼저 연락을 해야 처리절차를 밟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만약 보험회사 연락처를 알지 못한다면 경찰 조사시 도움을 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7 | 관계 기관 연락처

연락처, 홈페이지

주한미군

주한미군사령부로 우편물을 보내는 경우 반드시 등기우편으로 보내야 하며, 우편물을 보낸 후 미군측에서 받았는지 전화로 확인하여야 합니다. 미군측으로 보내는 우편물에는 사서함 주소 외에 상대방 미군의 군용 우편번호가 있어야 합니다.

전화통화인 경우 영어로 받는 경우에 한국어로 이야기를 하면 한국어 가능한 사람을 바꿔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영어로 말한다고 해서 전화를 끊지 마시고 일단 한국어 가능자와 통화하고 싶다고 이야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군부대 일반 대외 연락창구는 공보실이며, 한국어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한미군사령부

[140-023] 서울 용산구 용산동 3가 1번지 사서함 181호

36 미군범죄피해, 이렇게 해결하십시오

<http://www.usfk.or.kr/>

_주한미군사령관 공보실 T. 02-7913-4668 F. 02-7913-3537

_주한미군사령부 인사과 T. 02-7918-3382

_미8군 공보실, T. 02-7913-7998/8376 F. 02-7913-3537

_주한미군 배상사무소 T. 02-7914-8392 F. 02-7914-9864

그외 미군 연락처

_미2사단 공보실 T. 031-870-8899

_평택 K-6 (평성 육군기지) 공보실 T. 031-690-7652

_평택 K-55 (공군기지) 공보실 T. 031-661-4044

_군산 미공군기지 공보실 T. 063-470-5914

한국 중앙정부

한국 정부는 미군 관련 담당 분야별로 행정청이 정해져 있습니다. 외교통상부 북미국 북미 3과는 일반 미국, 미군 문제를 다루며 SOFA 합동위원회 한국측 대표를 맡아 미군측과 협상할 때 주요한 역할을 합니다. SOFA와 관련된 사항은 SOFA 운영실에서 모두 담당하고 있습니다.

법무부 검찰 4과는 형사상 미군범죄를 담당하며, 재판권 행사나 미군의 신병 인도 등에 대한 일을 맡고 있으며, SOFA 합동위원회 형사재판권 분과위원회 담당부서입니다. 법무부 송무과는 배상문제를 담당하며 국가배상 본부심의회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SOFA 합동위원회 민사청구권 분과위원회 담당부서입니다.

국방부는 주로 미군 시설, 공여지, 훈련 등에 대한 일을 담당하며, 한미 군사관계 전반을 관장합니다. 미래한미동맹정책구상회의 한국측 대표를 맡고 있으며 SOFA 합동위원회 시설분과위원회 담당부서로 국방부 내에서는 시설분과에서 담당하며, 미군 공여지 공여

7 관계 기관 연락처 37

와 해제, 미군 시설건축 등에 대한 일을 처리합니다. 한미간 방위비 분담금 협상도 국방부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환경부 정책총괄과에서는 미군에 의한 환경오염 문제를 담당하며, SOFA 합동위원회 환경분과위원회 담당부서로 공여지 반환시 환경 조사와 오염 복구 등에 대한 업무를 담당합니다.

외교통상부 <http://www.mofat.go.kr>
[110-051] 서울시 종로구 도렴동 95-1
북미국 북미3과 T. 02-2100-7406 F. 02-739-1574
sofa운영실 T. 02-2100-7841~2

법무부 <http://www.moj.go.kr>
[427-720]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
검찰4과 T. 02-503-7058 F. 02-503-7057
송무과 T. 02-503-7039

국방부 <http://www.moj.go.kr>
[140-701]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
시설분과 T. 02-748-4369

환경부 <http://www.me.go.kr>
[427-729]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책총괄과 T. 02-504-9239 F. 02-504-9205 / SOFA관련 02-2110-6668,9

지방자치단체 주한미군관련 주민상담센터

경기도2청 주한미군관련 주민상담센터
T. 031-850-2115 F. 031-850-2119
<http://north.gyeonggi.go.kr/0back/usarmy/usarmy.htm>

38 미군범죄피해, 이렇게 해결하십시오

평택시 주한미군관련 주민상담센터

T. 031-659-4493, 4803

법률단체

대한법률구조공단 <http://www.klac.or.kr>

ARS -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32 F. 02-596-1321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

<http://minbyun.jinbo.net>

T. 02-522-7284 F. 02-522-7285

시민단체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http://usacrime.or.kr>

[110-044] 서울시 종로구 필운동 184-3

T. 02-723-7057 F. 02-723-7059

미군기지되찾기 대구시민모임 <http://www.nousbases.org>

[705-829] 대구광역시 남구 봉덕3동 1005-4

T. 053-474-3381 F. 053-474-3382

우리땅미군기지되찾기 군산시민모임 E-mail | ksus@jinbo.net

[573-310] 군산시 삼학동 815-1 2층

T(F). 063-465-4004

녹색연합 <http://www.greenkorea.org> - 환경문제

[136-821] 서울시 성북구 성북동 113-34

T. 02-747-8500 F. 02-766-4180

8

부록 - 배상 서류

손해 또는 상해배상 신청서

손해 또는 상해배상 신청서 CLAIM FOR DAMAGE OR INJURY

일자
Date
정리번호
File Number:

배상심의회 위원장 귀하
Submit To: Chief of Compensation Committee
아래와 같이 군대지위협정 제23조에 의한 손해배상을 신청하나다.
I hereby file a claim in accordance with Article XXIII of SOFA as follows

1. 신청인 Claimant
(1) 성명 Name: 인 Do-Jang :
(2) 주소 Address :
(3) 연령 Age : (4) 직업 Occupation : (5) 성별 Sex :
(6) 혼인관계 Marital Status : (7) 피해자의 관계 Relation To Injured Party: (8) 주민등록번호

2. 신청금액 Amount of Claim
재산손해 Property Damage : 원 Won
내역 Break Down
재산손실 Loss of Property: 원 Won
파괴 Destruction of Property: 원 Won
기타손해 Other Damage: 원 Won
합계 Total: 원 Won
요양배상 Medical Treatment: 원 Won
휴업배상 Loss of Income: 원 Won
장해배상 Physical Handicap: 원 Won
인신손해 Personal Injury : 원 Won
내역 Break Down
유족배상 Bereaved Family: 원 Won
장례비 Funeral Rites: 원 Won
위자료 Pain and Suffering: 원 Won

3. 피해자 Victim
성명 Name: 생년월일 Date of Birth:
성별 Sex: 혼인관계 Marital Status: 직업 Occupation:
주소 Address: 본적 Permanent Address:
피해유형 Type of Damage: 사망 Death 상해(치료기간 주) Injury(Duration: weeks) 재산손해 Property Damage

4. 사고개요 Brief Description of Accident
발생일시 Date and Time of Accident:
발생장소 Place of Accident:
가해자 U.S. Party: 성명 Name: 계급 Grade: 소속부대명 Organization:
사고내용 Description of Accident:

5. 신청액 산정의 기초 Basis for Amount of Claim. 신청액 산정의 기초를 간단히 기입할 것 Briefly state calculations upon which damages are based.

6. 상기 신청과 관련하여 수령한 기타금액 Any other amount received in respect to this claim.

7. 증인 Witnesses
성명 Name: 주소 Address:
성명 Name: 주소 Address:
성명 Name: 주소 Address:

8. 첨부서류 Inclosures

9. 비고 Remarks
본 신청인은 이 신청금액이 다만 상기사고로 인하여 야기된 손해와 상해에 대한 것이고 상기 기재 사항은 조금도 틀림없이 정확하고 진실임을 선언함.
I declare that the amount of this claim covers only damage and injuries caused by the accident or incident described and that the foregoing statement is true and correct in every particular.
위 신청인 The claimant 인 Do-jiang

증명 Certificate
상기 면역은 정확함을 증명함 Certified true translation: 서명 Signature 성명과 직책 Name and Title 일자 Date

신청서를 제출하는데 있어서의 주의
1. 신청서는 신청인의 주소지 거주지 또는 사고발생지를 관할하는 본부배상심의회 및 그 지구배상심의회에 제출하여야 함
2. 대리인에 의하여 신청을 할 때는 위임장을 첨부할 것
3. 신청서에는 아래표에 해당하는 서류와 주민등록등본 호적등본 및 사고발생증명을 첨부할 것
4. 신청인이 피해자가 아닐 때는 반드시 신청할 권리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등을 첨부하여야 함
5. 필요하면 추가용지를 사용할 것

| 배상종류 | 신청원인 | 첨부서류 |
|------------|-------------------------------------|--|
| 요양배상 | 부상 또는 이명되어 요양의 비용을 청구하는 것 | 1. 의사의 증명서 또는 진단서 2. 요양비 청구서 또는 영수증 |
| 휴업배상 | 요양으로 인하여 수입액에 손실이 있었을 때 청구하는 것 | 1. 세무서장의 수입액 증명서 2. 구청장 시장 군수 또는 피해자의 근무처의장의 증명서 3. 기타 필요한 서류 |
| 장해배상 | 치료를 완료한후의 신체장애로 노동력의 감소 또는 손실이 있을 때 | 1. 신체장애의 종류를 기입한 의사의 증명서 2. 수입액 증명서 3. 기타 필요한 서류 |
| 유족배상 및 장례비 | 생명을 잃었을 때 | 1. 사망진단서 2. 수입액 증명서 3. 장례비 증명서 |
| 재산손해 | 부동산 또는 동산에 손해를 입었을 때 | 1. 수리견적서 영수증 내역서 2. 수리불가능일 때는 수리불가능 증명서 피해재산의 피해 전후의 시가증명서 3. 피해재산의 사진 |
| 기타손해 | 상기이외의 손해 | 손해의 내용을 명백히 하는 서류 |

손해 또는 상해배상 신청서 작성사례

손해 또는 상해배상 신청서
CLAIM FOR DAMAGE OR INJURY

일자
Date
장리번호
File Number:

배상심의회 위원장 귀하
Submit To: Chief of Compensation Committee
아래와 같이 군대지위연령 제23조에 의한 손해배상을 신청합니다.
I hereby file a claim in accordance with Article XXIII of SOFA as follows

1. 신청인 Claimant
(1) 성명 **홍길동** 인 전화 **031-123-4567**
Name: Do-Jang :
(2) 주소 **경기도 연천시 미산면 \$\$\$리 %%번지**
Address:
(3) 연령 **30세** (4) 직업 **농업** (5) 성별 **남**
Age: Occupation: Sex:
(6) 혼인관계 **기혼** (7) 피해자의 관계 **본인** (8) 주민등록번호 **691231-1234567**
Marital Status: Relation To Injured Party:

2. 신청금액 Amount of Claim
재산손해 Property Damage: 원 Won
인신손해 Personal Injury: 원 Won
내역 Break Down
재산손실 Loss of Property: 원 Won
요양배상 Medical Treatment: 원 Won
재산파괴 Destruction of Property: 원 Won
휴업배상 Loss of Income: 원 Won
기타손해 Other Damage: 원 Won
합계: **1,110,000** 원
Total: Won
내역 Break Down
유족배상 Bereaved: 원 Won
장례비 Funeral Rites: 원 Won
위자료 Pain and Suffering: **1,000,000** 원 Won

3. 피해자 Victim
성명 **홍길동** 생년월일 **1969년 12월 31일**
Name: Date of Birth:
성별 **남** 혼인관계 **기혼** 직업 **농업**
Sex: Marital Status: Occupation:
주소 **경기도 연천시 미산면 \$\$\$리 %%번지** 본적 **경기도 연천시 미산면 \$\$\$리 %%번지**
Address: Permanent Address:
피해유형 사망 상해(치료기간 **2** 주) 재산손해
Type of Damage: Death Injury(Duration: weeks) Property Damage

4. 사고개요 Brief Description of Accident
발생일시 **1998년 5월 30일 23:30경**
Date and Time of Accident:
발생장소 **경기도 연천시 미산면 \$\$\$리 소재 미군 훈련장 앞 노상**
Place of Accident:
가해자 **성명 아놀드 마이클 등** 계급 **병장** 소속부대명 **미2사단**
U.S. Party: Name Grade Organization:
사고내용 **미2사단 소속 미군들이 마을 입구를 차로 막고 주민들의 출입을 통제했다. 이에 항의하던 주민들이 미군들과 시비를 하던 중 아놀드 마이클 병장 등 수명의 미군들이 흥기를 휘두르며 폭행을 가해 경부 타박상, 우수부 절좌 등 2주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음**
Description of Accident:
미2사단 소속 미군들이 마을 입구를 차로 막고 주민들의 출입을 통제했다. 이에 항의하던 주민들이 미군들과 시비를 하던 중 아놀드 마이클 병장 등 수명의 미군들이 흥기를 휘두르며 폭행을 가해 경부 타박상, 우수부 절좌 등 2주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음

5. 신청액 산정의 기초 Basis for Amount of Claim. 신청액 산정의 기초를 간단히 기입할 것 Briefly state calculations upon which damages are based.

6. 상기 신청과 관련하여 수령한 기타금액 Any other amount received in respect to this claim.

7. 증인 Witnesses
성명 Name: 주소 Address:
성명 Name: 주소 Address:
성명 Name: 주소 Address:

8. 첨부서류 Inclosures **피해확인서, 주민등록등본, 상해진단서, 치료비 영수증.**

9. 비고 Remarks
본 신청액은 이 신청금액이 다만 상기사고로 인하여 야기된 손해와 상해에 대한 것이고 상기 기재 사항은 조금도 틀림없이 정확하고 진실임을 선언함.
I declare that the amount of this claim covers only damage and injuries caused by the accident or incident described and that the foregoing statement is true and correct in every particular.
위 신청인 **홍길동** 인
The claimant Do-Jang

증명 Certificate
상기 영역은 정확함을 증명함 Certified true translation:
서명 Signature
성명과 직책 Name and Title
일자 Date

신청서를 제출하는데 있어서의 주의
1. 신청서는 신청인의 주소지 거주지 또는 사고발생지를 관할하는 본부배상심의회 및 그 지구배상심의회에 제출하여야 함
2. 대리인에 의하여 신청을 할 때는 위임장을 첨부할 것
3. 신청서에는 아래표에 해당하는 서류와 주민등록등본 호적등본 및 사고발생증명을 첨부할 것
4. 신청인이 피해자가 아닐 때는 반드시 신청한 권리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들을 첨부하여야 함
5. 필요하면 추가용지를 사용할 것

| 배상종류 | 신청위원 | 첨부서류 |
|------------|-------------------------------------|---|
| 요양배상 | 부상 또는 이명되어 요양의 비용을 청구하는 것 | 1. 의사의 증명서 또는 진단서 2. 요양비 청구서 또는 영수증 |
| 휴업배상 | 요양으로 인하여 수입액에 손실이 있었을 때 청구하는 것 | 1. 세무서장의 수입액 증명서 2. 구청장 사정 교수 또는 피해자의 근무처의장의 증명서 3. 기타 필요한 서류 |
| 장례배상 | 치료를 완료한후의 신체장해도 노동력의 감소 또는 손실이 있을 때 | 1. 신체장해의 증진을 기입한 의사의 증명서 2. 수입액 증명서 3. 기타 필요한 서류 |
| 유족배상 및 장례비 | 생명을 잃었을 때 | 1. 사망진단서 2. 수입액 증명서 3. 장례비 증명서 |
| 재산손해 | 부동산 또는 동산에 손해를 입었을 때 | 1. 수리견적서 영수증 내역서 2. 수리불가능일때는 수리불가능 증명서 3. 피해재산의 사진 |
| 기타손해 | 상기이외의 손해 | 손해의 내용을 설명해 주는 서류 |

공무외 사건 사전지급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비공무사건 사전지급 신청서

REQUEST FOR ADVANCE PAYMENTS IN NON-OFFICIAL CASES

일자 : _____
Date: _____
정리번호: _____
File Number: _____

접수경유처: _____ 지구배상심의회
Submitted thru: _____ District Compensation Committee
접수처: 주한미군배상사무소장 귀하
Submitted To: Commander, US Armed Forces Claims Service, Korea
아래와 같이 군대지위법 제23조제6항에 따라 급히 필요한 사전지급을 신청합니다.
I hereby submit a request for advance payment of immediate needs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6, Article XXIII of the ROK-US SOFA, as follows

1. 신청인 Requester

(1) 성명: _____ 인
Name: _____ Signature
(2) 주소: _____
Address: _____
(3) 연령: _____ (4) 직업: _____ (5) 성별: _____
Age: _____ Occupation: _____ Sex: _____
(6) 혼인관계: _____ (7) 피해자와의 관계: _____ (8) 주민등록번호: _____
Marital Status: _____ Relation To Injured Party: _____ Korean ID No.: _____

2. 신청금액 Amount of requested advance payment

본인은 _____ 이유로 _____ 등 비용에 대하여 사전지급금이 즉시 필요한, I have an immediate need for the advance payment of _____ expenses for the following reasons: _____
사전지급을 요하는 시급한 비용은 다음과 같음
My immediate expenses are in the following amounts

| | |
|--|--|
| 치료비: _____ 원 Medical Treatment: _____ Won | 장례비: _____ 원 Funeral Rites: _____ Won |
| 합계: _____ 원 Total: _____ Won | |

3. 피해자 Victim

성명: _____ 생년월일: _____
Name: _____ Date of Birth: _____
성별: _____ 혼인관계: _____ 직업: _____
Sex: _____ Marital Status: _____ Occupation: _____
주소: _____ 본적: _____
Address: _____ Permanent Address: _____

피해유형: 사망 상해(치료기간 주) 기타(특정할 것)
Type of Damage: Death Personal Injury (Duration: _____ weeks) Other (please specify)

4. 사건개요 Details of Incident

발생일시: _____
Date and Time of Incident: _____
발생장소: _____
Location of Incident: _____

| | | | |
|-------------------|-------------|--------------|------------------------|
| 기해자 U.S. Party | 성명 Name: | 계급 Grade: | 소속부대명 Organization: |
|-------------------|-------------|--------------|------------------------|

사건내용(필요시 별지 첨부) Description of Incident, (attach separate sheet if necessary)

5. 첨부서류 Enclosures

6. 비고 Remarks

본 신청인은 이 신청금액이 다만 상기사건으로 인하여 야기된 적법하고 급박한 필수비용을 위한 것이며, 상기 기재 사항은 조금도 틀림없이 정확하고 진실임을 선언함. 본인의 사전지급신청에 대한 인가여부는 미합중국법원에 따라 결정될 제정사항임을 이해함. 또한, 본인은 미합중국의 사전지급 인가결정이 본 사건에 대한 미합중국의 법적 책임 또는 기타 책임을 인정하는 것이 아님을 이해함. 더욱이, 본인은 미합중국으로부터 받는 사전지급금액이 동 사건과 관련하여 본인이 제출하는 손해배상청구에서 최종 합의될 손해배상금액으로부터 공제될 것임을 이해함. 또한, 본인은 만일에 미합중국에게 동 사건에 대한 법적 책임이나 기타 책임이 없다고 인정되면 본인이 받은 사전지급금을 미합중국에 반환할 것에 동의함.

I declare that the amount of this request covers only legitimate and immediate needs arising from the incident described above, and that the foregoing information is true and correct in every particular. I understand that the decision whether to approve my request for an advance payment is a matter of discretion to be decided in accordance with the laws of the United States. I also understand that the approval of an advance payment request by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does not constitute an admission by the United States of legal responsibility or other liability for the incident described herein. I further understand that any advance payment I may receive from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will be deducted from any award made in final settlement of any claim I make relating to this incident. I also agree to repay to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y advance payment I receive if the evidence later shows that the United States bears no legal responsibility or other liability for the incident.

위 신청인 _____ 인
Requester _____ Signature

| | | | |
|----------------|--|---|--------------------|
| 증명 Certificate | 상기 번역은 정확함을 증명함 Certified true translation: | 서명: _____ Signature: 성명과 직책: Name and Title: | 일자: _____ Date: |
|----------------|--|---|--------------------|

신청서를 제출하는데 있어서의 주의

| | | |
|-------|---|--|
| 종류 | 신청 원 인 | 첨 부 시 규 |
| 치 료 비 | 미군 또는 미군속의 비공무중 사고로 인하여 부상을 입고 치료요하는 경우 | 1. 의사의 증명서 또는 진단서 2. 치료비 청구서 또는 영수증 |
| 장 례 비 | 생명을 잃었을 때 | 1. 사망전단서(사체검안서) 2. 장례비 증명서 |

1. 신청서는 신청인의 주소지 거주지 또는 사고발생지를 관할하는 지구배상심의회에 제출하여야 함

2. 대리인에 의하여 신청을 할 때는 위임장을 첨부할 것

3. 신청서에는 열쇠에 해당하는 서류와 주민등록등본 호적등본 및 사고발생증명을 첨부할 것

4. 신청인이 피해자가 아닐 때는 반드시 신청한 권리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등을 첨부하여야 함

5. 필요하면 추가용지를 사용할 것

공무의 사건 사전지급 신청서 작성사례

[별지 제1호 서식] 비공무사건 사전지급 신청서
REQUEST FOR ADVANCE PAYMENTS IN NON-OFFICIAL CASES

일자 : _____
Date: _____
정리번호: _____
File Number: _____

접수경유처: _____ 지구배상심의회
Submitted thru: _____ District Compensation Committee
접수처: 주한미군배상사무소장 귀하
Submitted To: Commander, US Armed Forces Claims Service, Korea
아래와 같이 군대지위협정 제23조제6항에 따라 급히 필요한 사전지급을 신청합니다.
I hereby submit a request for advance payment of immediate needs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6, Article XXIII of the ROK-US SOFA, as follows

1. 신청인 Requester
(1) 성명: 이영미 인
Name: _____ Signature: _____
(2) 주소: 경기도 의정부시 신곡동 \$\$\$번지
Address: _____
(3) 나이: 35세 (4) 직업: 주부 (5) 성별: 여
Age: _____ Occupation: _____ Sex: _____
(6) 혼인관계: 기혼 (7) 피해자와의 관계: 본인 (8) 주민등록번호: 691231-2345678
Marital Status: _____ Relation To Injured Party: _____ Korean ID No.: _____

2. 신청금액 Amount of requested advance payment
본인은 _____ 미군에 의한 교통사고 _____ 이유로 _____ 치료비 _____ 등 비용에 대하여 사전지급금이 즉시 필요함.
I have an immediate need for the advance payment of _____ expenses for the following reasons: _____
사전지급을 요하는 시급한 비용은 다음과 같음
My immediate expenses are in the following amounts
치료비: 2,250,000 원 장례비: _____ 원
Medical Treatment: _____ Won Funeral Rites: _____ Won
합계: 2,250,000 원
Total: _____ Won

3. 피해자 Victim
성명: 이영미 생년월일: 1969년 12월 31일
Name: _____ Date of Birth: _____
성별: 여 혼인관계: 기혼 직업: 주부
Sex: _____ Marital Status: _____ Occupation: _____
주소: 경기도 의정부시 신곡동 \$\$\$번지 본적: 경기도 의정부시 신곡동 \$\$\$번지
Address: _____ Permanent Address: _____
피해유형: 사망 상해(치료기간 6 주) 기타(특정할 것)
Type of Damage: _____ Personal Injury (Duration: weeks) _____ Other (please specify) _____

4. 사건개요 Details of Incident
발생일시: 2002년 8월 2일 12:00경
Date and Time of Incident: _____
발생장소: 의정부시 신곡동 앞길 횡단보도
Location of Incident: _____
가해자: _____ 계급: 병장 소속부대명: 미2사단
U.S. Party Name: _____ Grade: _____ Organization: _____
사건내용(별지서 별지 첨부) Description of Incident, (attach separate sheet if necessary)
2002년 8월 2일 밤 12시 경 횡단보도를 건너는데 미군 차량이 신호를 무시한 채 돌이달아 전차 6주의 상해를 입었음. 당시 미군은 음주상태였음.

5. 첨부서류 Enclosures: 교통사고사실확인원, 주민등록등본, 치료비 영수증, 향후 치료비 내역서, 진단서, 의사 소견서

6. 비고 Remarks
본 신청인은 이 신청금액이 다만 상기사건으로 인하여 야기된 적법하고 급박한 필수비용을 위한 것이며, 상기 기재 사항은 소급도 불응없이 명확하고 진실임을 선언함. 본인의 사전지급신청에 대한 일가어부는 미합중국법원에 따라 결정된 재판사양임을 이해함. 또한, 본인은 미합중국의 사전지급 인가결정이 본 사건에 대한 미합중국의 법적 책임 또는 기타 책임을 인정하는 것이 아님을 이해함. 더욱이, 본인은 미합중국으로부터 받은 사전지급금액이 동 사건과 관련하여 본인이 제출하는 손해배상청구에서 최종 합의된 손해배상금액으로부터 공제된 것임을 이해함. 또한, 본인은 말일에 미합중국에게 동 사건에 대한 법적 책임이나 기타 책임이 없다고 인정되던 본인이 받은 사전지급금을 미합중국에 반환할 것에 동의함.
I declare that the amount of this request covers only legitimate and immediate needs arising from the incident described above, and that the foregoing information is true and correct in every particular. I understand that the decision whether to approve my request for an advance payment is a matter of discretion to be decided in accordance with the laws of the United States. I also understand that the approval of an advance payment requested by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does not constitute an admission by the United States of legal responsibility or other liability for the incident described herein. I further understand that any advance payment I may receive from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will be deducted from any award made in final settlement of any claim I make relating to this incident. I also agree to repay to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y advance payment I receive if the evidence later shows that the United States bears no legal responsibility or other liability for the incident.

위 신청인 이영미 인
Requester Signature

증명 Certificate: 상기 번역은 정확함을 증명함 Certified true translation: _____
서명: _____ 인
Signature: _____ Name and Title: _____
일자: _____
Date: _____

신청서를 제출하는데 있어서의 주의
1. 신청서는 신청인의 주소지 거주지 또는 사건발생지를 관할하는 지구배상심의회에 제출하여야 함.
2. 대리인에 의하여 신청을 할 때는 위임장을 첨부한 것.
3. 신청서에는 일표에 해당하는 서류와 주민등록등본 호적등본 및 사고발생증명을 첨부하여야 함.
4. 신청인이 피해자가 아닐 때는 반드시 신청한 권리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함.
5. 필요하면 추가용지를 사용함 것.

| 종류 | 신청 원인 | 첨부 서류 |
|-----|---|--|
| 치료비 | 미군 또는 미군속의 비공무중 사고로 인하여 부상을 입고 치료할 요하는 경우 | 1. 의사의 증명서 또는 진단서 2. 치료비 청구서 또는 영수증 |
| 장례비 | 생명을 잃었을 때 | 1.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2. 장례비 증명서 |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운동본부는

'주한미군의 윤금이씨 살해사건 공동대책위원회'의 활동성과를 계승하여 1993년 상설적인 미군범죄 대응 시민단체로서 결성되었으며, 미군범죄 및 미군주둔으로 인한 각종 피해를 극복하고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등 불평등한 한미간의 제도를 개선하여 평등한 한미관계를 실현하기 위한 목적으로 활동합니다.

운동본부는

미군범죄 사건 사고를 접수받고 미군범죄의 공정한 해결과 손해배상 청구 지원, 미군범죄 근절 대책마련, 미군범죄 피해백서 발간, SOFA 개정운동, 미군기지의 실태조사와 각종 피해에 대한 대책 마련 등의 활동을 합니다.

운동본부는

회원들의 회비와 후원금으로 운영되며, 정기적인 소식지 발간과 이메일 발송, 미군피해 현장 탐방 등 각종 모임을 통해 회원들과 함께 하는 활동들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회원 가입은 홈페이지나 사무실로 연락하여 신청할 수 있고 아래의 계좌를 통해 후원할 수 있습니다.

조흥은행 325-04-471053 정유진
농협 027-02-224544 정유진
국민은행 205-21-0736-160 전우섭

미군범죄 근절과 평등한 한미관계를 위한 활동에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후원을 바랍니다.

50 미군범죄피해, 이렇게 해결하십시오

미군범죄피해 상담 안내서

발행일 | 2004년 9월 30일
발행인 | 문대골
발행처 |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제작 | (주)인기획
주소 | 서울시 종로구 필운동 184-3
전화번호 | 02-723-7057
팩스번호 | 02-723-7059
인터넷 주소 | <http://usacrime.or.kr>
이메일 주소 | us@usacrime.or.kr

표지사진 | 민원기
목차사진 | 이상엽

* 이 책자는 국가인권위원회 2004년도 인권단체 협력사업에 의해 만들어지며, 본 사업의 내용은 국가인권위원회의 공식 의견이 아님을 밝힙니다.